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와 국제협력

임돈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그대는 그동안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을 감행해왔다. 서구문화에 대해 비서구문화를, 남성 문화에 대해 여성문화를, 엘리트 문화에 대해 민속 문화를 그리고 유형문화에 대해 무형문화에 행한 차별이 그것이다. 근대이후 서구의 팽창과 더불어 서구 문화는 비서구 문화에 비해 더 합리적이고 가치 있고 우월한 문화로, 비서구 문화는 야만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열등한 문화로 주장·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지구촌화하는 현대에서 서구 문화는 전 세계로 확산되는 반면, 많은 비서구 문화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성 문화에 대해 여성문화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치와 중요성이 낮은 문화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엘리트 문화에 비해 민속 문화는 뒤떨어지고 낮은 문화로 대접받았고, 사라져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 왔다.

유형문화유산에 비해 무형문화유산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소홀하게 여겨졌다.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문화유산협약을 채택한 바 있지만 이때 문화유산의 범위는 피라미드나 만리장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한정되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그보다 31년 늦은 2003년도에 협약이 채택된 사실은 무형유산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을 잘 보여준다.

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이분법적 인식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인류학, 민속학 그리고 여성학과 같은 분야의 발전은 문화간의 위계가 올바르게 아니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모든 문자는 나름대로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문화의 다양성선언(2001)' 역시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 이래 몇몇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전통 문화와 민속에 대한 보호제도를 설치할 것을 권유해 왔다. 1989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마침내 '전통문화와 민속보호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가 채택되었고, 유네스코는 그후 회원국들에 대해 무형문화보존 훈련 프로그램의 실시,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1989년 권고만으로는 무형유산 전통문화의 보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 유네스코는 여러 차례의 전문가회의를 거쳐 1998년 제155차 집행위원회에서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선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세계무형문화유산 걸작 선포 작업이 시작되었다. 각 회원국이 프로그램에 따라 2년마다 하나의 무형문화유산 후보를 제출하면 국제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이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포는 2001년 19개, 2003년 28개, 그리고 2005년 43개의 무형문화유산이 등 총 90여개의 유산이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이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포는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2001년 선정때는 총 31개국이 신청하였으나 2005년에는 약 3배가 늘어난 90여개국이 후보작을 제출할 정도로 단기간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이 무형문화유산 걸작선에 대한 관심은 무형문화유산협약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03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 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10월 17일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그동안 많은 노력을 들인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 통과되었다. 이 협약은 법적 효력을 지닌 이 협약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세계무형문화유산은 회원국들의 긴밀한 협조와 감시 하에 보호·보존 될 수 있게 되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은 2003년 10월 17일에 통과하였지만 이 협약이

발효되기 위하여는 회원국의 30개국이 비준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6년 1월 20일에 루마니아가 제30번째 나라로 이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그로부터 3개월 후인 4월20일부터 협약이 정식 발효되게 되었다. 유네스코 고이치로 마쓰우라(Koichiro Matsuura) 사무총장은 “무형유산에 대한 전 세계의 지대한 관심, 그리고 근대화와 세계화 과정에서 위협받고 있는 무형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전 세계적인 공감”이 2003년 10월 총회에서 협약이 통과 된지 3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효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발효 후 무형문화유산협약 당사국 총회(General Assembly of States Parties)가 만들어졌고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도 구성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협약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어 지금 현재 무형문화유산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144개국에 이른다.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유형문화유산이 과거의 인류의 역사적 자산이라면 무형문화유산은 과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살아있는 전통문화이다. 유형유산이 고정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무형문화유산은 시대에 따라 항상 변화하는 역동적인 모습이다. 즉 유형문화유산은 죽은 유산이라면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는 문화이다.

따라서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협약의 내용도 다르다. 유형문화유산 협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진정성(authenticity)’이다. 즉, 역사적 건물과 유적이 특정 시대에 만들어진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은 시대에 따라 항상 변하기 때문에 특정시대의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와 관련된 진정성을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형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는 문화유산의 다양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간에 어느 유산이 다른 유산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것이 1972년의 세계유산협약과 2003년의 무형문화유산협약과의 차이점이다. 1972년의 협약에는 제1조와 제2조에 (유형)문화유산의 선정 기준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들고 있으나, 2003년의 무형문화유산협약의 정의에는 그런 가치적인 정의가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두 가지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긴급 보호 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과 (2)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협약 제16조, 제17조).

그동안 세계유형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역사적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즉 피라미드, 만리장성같은 '위대한' 역사적 건축물 등의 지정이 그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건축물이 많은 나라는 문명국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나라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은 그동안 세계유형유산의 대부분을 독점하다시피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유적지를 갖지 못한 나라는 박탈감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90여개의 무형문화유산의 목록은 비서구사회의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90개국(이 중 7개는 다국적 무형문화유산이다)의 무형문화유산 중 아시아태평양지역이 27개로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아부다비에서 새로 대표목록으로 지정된 77개의 대표 목록도 아태지역의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무형문화유산은 그 나라나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세계화와 지구촌화하는 시대에 서구의 문화가 전 세계에 급속히 퍼져가면서 각 나라의 전통 문화가 급속히 사라져 가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고유 문화 전통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서구에서도 전통 문화는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는 '옛것'이고 새 시대에 맞는 새 문화는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비서구 국가의 입장에서는 다르다. 사라져 가는 옛 전통문화는 '우리 것'이고 대신 들어오는 것은 서구 문화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판소리 경우를 보면 자명해진다. 따라서 비 서구 국가들이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에 특히 관심이 많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유네스코가 그동안 펴 온 일련의 세계무형문화 보호 정책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유형문화 위주의 문화개념에서 무형문화유산도 유형문화유산만큼 소중한 인류의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져온 점이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유형문화유산 정책의 영향력과 주도권이 서구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비서구 사회의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가장 큰 잠재적 가치는 세계화·지구촌화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 어떤 특정 지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이미 근대는 서구화의 영향으로 서구에서 창조된 문화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어 소비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예로 미국의 음악, 춤, 영화 그리고 음식

등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다. 지구촌 어디를 가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음악과 춤을 즐기고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며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종이 지구상에 존재하여야 건강한 지구이지 하나의 종이 다른 모든 종을 멸망시키고 존재한다면 지구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화의 막강한 영향하에 있는 비서구 사회에서 사라져 갈 위치에 있는 전통문화인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존속시킴으로써 다양한 인류 문화를 존치시키는 일이야말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정책의 방향은 유형문화유산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위에서 논의하였다. 세계유형문화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역사적 유물 유적을 선정해 왔다. 그동안 세계유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유산이 서구에 집중 분포됨으로써 서구 중심적이고 다른 문화를 타자화하는 데 익숙해져왔다. 세계유형문화유산이 많은 지역은 더 문명화되고 역사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는 우월감을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형문화유산이 적은 나라는 열등의식을 가져온 게 사실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극심한 경쟁이 이러한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등재유산 수를 기준으로 한 위계적 평가와 유산간의 경쟁을 강조하는 세계(유형)문화유산정책은 서구의 논리로서 이 때문에 서구사회가 유형문화유산정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무형문화유산정책은 유형문화유산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패러다임으로이어야 한다.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선정되고 해서 그렇지 않은 무형문화유산보다 더 가치적으로 우월하다는 관점을 버려야 한다. 가치적, 위계적 그리고 경쟁적 관점보다는 모든 무형문화유산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상대적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무형문화유산을 생산하고 보유하는 집단의 입장에서 그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보는 관점을 길러야 한다. 세계무형문화유산이 '평등한 존중과 배려'를 받는 그런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우리는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논의할 때는 위와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 1. 국제 협력

이처럼 유형유산과 무형유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협력은 무형문화유산 협약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등한 존중과 배려를 하는 무형문화유산의 국제 협력의 양상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선 각 나라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 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집단의 무형문화유산을 이해하는 관점을 길러야 한다. 유형유산과 달리 무형문화유산과 연행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

각 나라의 무형문화유산은 인류의 보편성과 그 무형문화유산이 창조되고 전승되는 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그 지역 공동체 주민에 의해 수천년 또는 수백년에 걸쳐 오랜 시간동안 전해져 내려온 역사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전승되어온 살아있는 전통이다. 그러므로 지역적 특수성이 거기에 녹아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한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이 타지역으로 소개될 때는 그 무형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타지역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설명없이 무형문화유산 자체만을 타 지역에 소개한다면 그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본다.

나는 중국 예술원 주최의 무형문화유산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했을 때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서 민족음악을 가르치는 교수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분은 나에게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를 미국학생들에게 강의한 경험을 얘기해 주었다.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판소리를 들려주었는데 반응이 호의적이 아니었다고 한다. 지루해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강의에서는 '서편제'라는 영화를 먼저 보여주고 판소리를 들려주었더니 학생들이 판소리에 관심을 갖고 판소리의 예술성에 대해서도 호감을 가졌다는 경험담을 얘기해 주었다. 즉 무형문화유산 자체만을 소개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으며 그 무형문화유산이 처한 역사적·사회적 문화적 상황<sup>context</sup>을 같이 소개했을 때 그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감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무형문화유산을 창조하고 전승해 온 개인, 집단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저작권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점이다. 그 무형문화유산

을 창조하고 전승시켜 온 집단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보통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할 때는 개인이 창조한 예술에 한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은 어떤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지역 공동체 집단의 산물이다. 무형문화유산의 관리와 소유라는 주제에 관련해 지금 현재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전통 지식(traditional knowledge)’, ‘전통적 문화표현(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을 보호하는 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법의 수혜자는 이 무형문화유산을 소유한 지역 공동체 주민들이다. 저작권법은 그들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표현이 부정적으로 사용되거나 그들을 멸시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은 대체로 관습법에 기반하여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다. 두 가지 방법으로 관습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한 가지는 관습법 자체를 법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관습법을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다. WIPO는 국내법적인 문제와 국제법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 II. 지역적 역량 강화

무형문화유산협약이 발효되고 많은 나라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였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무형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에 비해 그 중요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1960년대 문화재법을 도입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재라면 석굴암이나 남대문 같은 유형문화재만 가치 있고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굿이라든가 가면극 같은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라는 인식도 거의 없었고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은 더욱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민속 예술인들은 사회적으로 천시를 당하는 집단에 속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의 초대 무형문화재분과 위원장이었던 임석재 선생님께서 자신의 회고담에서 당시 탈춤을 추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추는 탈춤이 훌륭하고 지켜 나아가야 할 예술이기 때문에 인간문화재를 시켜 줄 테니 계속 탈춤을 추라고 권해도 거절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찾아가서 겨우 설득 했다고 말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서로 인간문화재를 하겠다고 하는 것과는 격세지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에 비해 그 중요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관심을 많이 보여

왔고, 인간문화재 제도를 갖고 있는 한국의 경우도 한국 문화재청 예산의 10%미만 무형문화유산에 쓰여지고 있다. 한국만큼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은 일본도 10%미만의 예산이 쓰여진다고 들었다. 무형문화유산보호의 경험이 없는 다른 나라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 회원국들은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유형문화유산에 쓰이는 만큼의 예산을 배정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도록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유네스코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세계유산센터에 비해 무형문화유산과는 예산, 조직, 인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 빨리 확대 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에 배정되는 예산의 결여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을 담당할 기관과 전문 인력의 부족 등도 지역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문제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연구기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관심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개인, 집단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지역사회가 그 무형문화유산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역 역량을 키우는 일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등록하고 지정하는 데 지역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민들이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을 정의하고 지정하도록 하며 정부나 연구기관, 비정부기관은 그들을 돕고 협조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하는 방법이나 기록용 녹음기나 촬영기술들을 습득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노인들을 무형문화유산의 스승 또는 지도자로 선정하고 그들을 통하여 그 무형문화유산이 젊은 세대들에게 전승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이 표상되고, 유지되고 또 이용 가능하도록 즉 지역 문화센터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기관이나 지역 기관과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공식화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이 공식적인 기관의 일원으로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담당자가 국가적, 지방적, 읍·면 단위의 모든 정책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학생들이 학교 프로그램 중의 일부로 목록 작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젊은 세대들이 무형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목록 작성에는 궁극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정보를 조직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사용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database)화 하여야 한다. 특히 사라져 갈 위협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은 특히 긴급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지역민들이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모든 업무를 주체적으로 수행 할 때 지역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 Ⅲ.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와 국제협력

유네스코는 지난 10월 21일 제35차 총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한국, 중국, 일본에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를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으로 인정 한 바 있다. 대체적으로 한 지역에 하나의 센터를 인정한 과거의 관행에 비해 이례적이다.

세 곳의 무형문화유산센터 가운데 한국은 무형문화유산의 정보와 네트워크 분야, 중국이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의 교육 훈련, 그리고 일본이 조사 연구분야를 각각 맡기도 했다.

아태지역에 이렇게 세 곳의 센터가 지정된 것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유형문화유산의 보호방안에 비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정책은 왕도가 없을 만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목조 유형유산 보호 방법은 한국의 목조 건물 보존 방법에 쉽게 응용할 수 있다. 그만큼 보호 기술의 응용성이 뛰어나다. 유형문화유산의 보호방식은 큰 변형을 가하지 않고서도 다른 지역의 유산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의 경우는 다르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개념이 포괄적이고 무형문화유산 자체가 다양하며, 이 무형문화유산은 한 지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에 한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방안을 다른 지역의 보호 방안으로 응용하기란 유형문화유산만큼 쉽지 않다.

물론 협약에 무형문화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만 무형문화유산 개념은 너무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해석과 이해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어떤 나라는 무형문화유산이 행해지는

공간을 보호하여야 할 분야로 인식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도 각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 서구화,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지역에서는 그들의 전통문화가 급격히 사라져가는 위기에 직면해 자연히 고유의 문화인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인식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인식이 낮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 뿐만 아니라 유형문화유산에 비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성과가 많이 축적된 것도 아니고 연구 인력 또한 풍부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앞으로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의 인간문화재 제도나 일본의 무형문화유산보호제도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훌륭한 정책이지만 그것이 모든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보호 방안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세 나라의 무형문화센터는 그들이 분담한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지만 또한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무형문화유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전 세계 인구의 60%가 이 지역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이 존재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무형문화에 대한 관심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결과적으로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이 수적으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무형문화의 숫자도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

그러나 한편 아태지역에서도 나라 간 지역 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편차가 많이 있다. 아태지역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은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과 나라도 많다. 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목록은 많이 등재되어 있으나 네팔, 태국등의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과 태평양지역의 나라들 중 아직 하나도 등재 신청을 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다. 아태지역센터들은 이 지역들이 앞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역적 편차를 없애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태지역에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센터가 생겨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업무를 분담하게 된 것은 무형문화유

산 보호를 위해 다행한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여기서 마련된 보호 방안들이 다른 지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